

전주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가단1487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진현덕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208,942원 및 그 중 42,681,612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6. 18.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9. 12. 31. 접수 제1845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 (1) 원고는 2011. 7. 14. 피고 A과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기간 2011. 7. 14.부터 2012. 7.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계속하여 연장되었다.
- (2)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연체사고를 통지받고 2020. 5. 27. C은행에 42,681,6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채권보전비용으로 527,330원을 지출하였다.
- (3) 위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9. 4. 1. 이후 연 8%이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A은 2019. 12. 31. 오빠인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2.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등

- (1) 피고 A은 2006년경부터 군산시 D 소재 'E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20. 3.경 폐업하였다.
- (2) 피고 A은 2020. 6.경 파산신청을 하여 2020. 9. 8. 파산선고(전주지방법원 2020하단10237)를 받았다.

(3) 피고 A이 파산절차에 제출한 재산과 채무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재산과 채무는 아래와 같고, 아래 채무액이 재산의 총 가액을 초과한다.

(가) 채무 : 원금이 별지 채무내역 기재와 같이 446,419,898원이다.

(나) 재산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② 충남 부여군 F 전 83㎡

③ 2006년식 토스카 차량((차량번호 1 생략), 2020. 3.경 폐차하였다)[파산관재인보고서(갑 제9호)에 기재된 예상해약환급금 33,522,766원 상당의 각 보험은 피고 A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각 보험 중 대부분의 보험수익자를 동생인 G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A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3,208,942원(대위변제금 42,681,612원 + 채권보전비용 527,330원) 및 그 중 42,681,6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6. 18.까지 약정에 의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과 피고 B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피고 A의 채무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 3개월만에 주유소를 폐업하였다),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는 피고 B이 피고 A에 대하여 실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목 록

1. 충남 부여군 H 전 324㎡

2. 충남 부여군 H

[도로명주소] 충남 부여군 I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1.42㎡. 끝.

채무내역

순번	채권자	발생일	채무원금(원)	사용처
1	J(주)	1999. 10. 22. 신용카드	16,764,799	공과금, 생활비
2	K(주)	2000. 5. 31. 신용카드	20,000,000	유류대금
3	L(주)	2011. 11. 10. 신용카드	31,905,600	유류대금
4	중소기업은행	2018. 12. 24. 신용카드	33,600,000	유류대금
5	M(주)	2015. 9. 9. 신용카드	40,003,300	유류대금
6	N(주)	2015. 9. 24.	199,561,890	유류대금
7	O(주)	2019. 10. 16. 신용카드	11,384,309	국세 등 공과금
8	원고	2011. 7. 14.	42,500,000	대출금의 구상금
9	피고 B	2019. 12. 20.	50,700,000	사업자금, 채무변제
	합계		446,419,898	

